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088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redacted]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486,1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15.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별지

피고의 2017. 7. 7.자 취득세 납세고지 내역

(단위:원)

순번	차량번호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1	A	30,818,182	2,157,270	1,592,490	3,749,760
2	B	48,454,546	3,391,810	2,502,810	5,894,620
3	C	65,363,636	4,575,450	3,376,220	7,951,670
4	D	63,181,818	4,422,720	3,263,520	7,686,240
5	E	43,363,636	1,635,450	1,206,300	2,841,750
6	F	58,727,273	4,110,900	3,032,190	7,143,090
7	G	53,363,636	3,735,450	2,754,140	6,489,590
8	H	23,545,455	1,648,180	1,215,190	2,863,370
9	I	58,000,000	4,060,000	2,989,780	7,049,780
10	J	66,363,636	4,645,450	3,420,900	8,066,350
11	K	50,272,727	3,519,090	2,590,390	6,109,480
12	L	100,363,636	7,025,450	5,171,430	12,196,880
13	M	68,000,000	4,760,000	3,503,830	8,263,830
14	N	93,381,818	6,536,720	4,811,670	11,348,390
15	O	50,272,727	3,519,090	2,589,330	6,108,420
16	P	52,727,273	3,690,900	2,715,760	6,406,660
17	Q	28,454,545	591,810	435,450	1,027,260
18	R	37,454,545	1,221,810	899,000	2,120,810
19	S	68,000,000	4,760,000	3,502,400	8,262,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20	T	54,272,727	3,799,090	2,795,360	6,594,450
21	U	63,636,363	4,454,540	3,277,640	7,732,180
22	V	96,272,727	6,739,090	4,954,570	11,693,660
23	W	40,909,091	1,463,630	1,076,050	2,539,680
24	X	47,545,455	3,328,180	2,443,870	5,772,050
25	Y	58,000,000	4,060,000	2,981,250	7,041,250
26	Z	68,909,091	4,823,630	3,541,980	8,365,610
27	AA	50,272,728	3,519,090	2,583,000	6,102,090
28	AB	28,454,545	591,810	434,380	1,026,190
29	AC	54,272,727	3,799,090	2,788,520	6,587,610
30	AD	41,363,636	2,895,450	2,125,260	5,020,710
31	AE	30,818,182	2,157,270	1,583,430	3,740,700
32	AF	68,909,090	4,823,630	3,540,530	8,364,160
33	AG	30,818,182	2,157,270	1,582,780	3,740,050
34	AH	28,454,545	591,810	434,200	1,026,010
35	AI	49,818,182	3,487,270	2,557,550	6,044,820
36	AJ	97,636,364	6,834,540	5,012,440	11,846,980
37	AK	110,154,545	7,710,810	5,655,100	13,365,910
38	AL	38,090,909	1,266,360	928,740	2,195,100
39	AM	114,909,091	8,043,630	5,899,190	13,942,820
40	AN	34,272,727	999,090	732,720	1,731,810
41	AO	30,818,182	2,157,270	1,582,130	3,739,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42	AP	28,454,545	591,810	434,030	1,025,840
43	AQ	54,272,727	3,799,090	2,786,240	6,585,330
44	AR	110,363,637	7,725,450	5,663,520	13,388,970
45	AS	58,909,091	4,123,630	3,023,020	7,146,650
46	AT	52,909,091	3,703,630	2,715,120	6,418,750
47	AU	44,818,182	3,137,270	2,299,920	5,437,190
48	AV	83,200,000	5,824,000	4,269,570	10,093,570
49	AW	57,272,727	4,009,090	2,939,050	6,948,140
50	AX	30,818,182	2,157,270	1,581,490	3,738,760
51	AY	30,818,182	2,157,270	1,581,490	3,738,760
52	AZ	45,363,636	3,175,450	2,327,920	5,503,370
53	BA	53,454,545	3,741,810	2,743,110	6,484,920
54	BB	50,272,727	3,519,090	2,579,830	6,098,920
55	BC	50,272,727	3,519,090	2,579,830	6,098,920
56	BD	48,727,273	3,410,900	2,500,530	5,911,430
57	BE	30,818,182	2,157,270	1,581,490	3,738,760
58	BF	38,121,818	2,668,520	1,956,280	4,624,800
59	BG	66,363,636	4,645,450	3,405,570	8,051,020
60	BH	65,181,818	4,562,720	3,338,080	7,900,800
61	BI	54,272,727	3,799,090	2,779,400	6,578,490
62	BJ	34,090,909	2,386,360	1,741,560	4,127,920
63	BK	39,000,000	1,330,000	969,830	2,299,8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9

64	BL	30,818,182	2,157,270	1,569,840	3,727,110
65	BM	64,545,455	4,518,180	3,283,800	7,801,980
66	BN	75,909,091	3,913,630	2,844,420	6,758,050
67	BO	64,090,909	4,486,360	3,260,680	7,747,040
68	BP	30,818,182	2,157,270	1,564,010	3,721,280
69	BQ	59,818,182	4,187,270	3,035,760	7,223,030
70	BR	59,818,182	4,187,270	3,030,740	7,218,010
71	BS	30,818,182	2,157,270	1,558,830	3,716,100
72	BT	78,245,455	4,077,180	2,941,270	7,018,450
73	BU	30,818,182	2,157,270	1,542,010	3,699,280
74	BV	34,000,000	980,000	695,800	1,675,800
75	BW	30,454,545	2,131,810	1,513,580	3,645,390
76	BX	28,409,091	588,630	417,030	1,005,660
77	BY	47,272,727	3,309,090	2,274,990	5,584,080
78	BZ	30,636,364	2,144,540	1,392,650	3,537,190
79	CA	99,272,727	6,949,090	4,500,220	11,449,310
80	CB	50,545,455	3,538,180	2,291,310	5,829,490
81	CC	26,653,636	1,865,750	1,197,060	3,062,810
합계		4,299,439,087	281,360,420	204,794,370	486,154,790

끝.